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01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박희승 · 민병덕 · 김정호

윤준병 · 김준혁 · 서영교

정준호 • 박상혁 • 안호영

강유정 • 전진숙 • 이기헌

소병훈 · 김문수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이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1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를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로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

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 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 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 -----. <후단 삭제> 다만, 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 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신설> 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재정 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 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 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 전등기, 변경등기 및 제4항에 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 따른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 제7조(사업) ① ------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생략)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2. 공공보건의료사업 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라 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제17조(보조금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3.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보조금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 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그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